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대상의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포함 명확화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235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대상의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포함 명확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성국 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21.
3.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의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

Ⅲ. 검토의견

1.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대상의 범위에 청소년복지 시설의 장 포함 명확화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통보대상인 친권자등의 범위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u>친권자등</u>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 ----- ----- ----- ----- ----- ----- ----- -- <u>친권자등(해당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중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u>

② (생 략)	정하는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50조¹⁾는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16조제1항²⁾, 제28조제1항³⁾, 제29조제1항·제2항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⁵⁾까지를 위반하는 행위의 원

- 1)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청소년 보호법」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5)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 6. (생 략)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이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에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장 및 친권자등에게 6,793건을 통보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최근 3년간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 현황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통보 건수	4,168건	7,096건	6,793건

주. 학교장 및 친권자등을 구분하여 통계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출처: 경찰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⁶⁾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및 중장기쉼터로 구분되는데, 일시쉼터의 경우 가출·거리배회 및 노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로서 보호기간이 24시간에서 7일 이내로 일시적이고, 단기쉼터의 경우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거주기간이 3개월 이내⁷⁾로 단기보호가 원칙이며, 중장기쉼터는 보호기간을 3년 이내⁸⁾로 운영하고 있다고 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하여 일정 기간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⁹⁾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한편 현행법 제3조¹⁰⁾는 친권자등을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친권자등에게 청소년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7) 쉼터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2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8) 운영위원회가 장기보호가 필요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9)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10) 「청소년 보호법」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② 친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과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처럼 친권자등에게 청소년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복지시설은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¹¹⁾의 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대상인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 중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장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선도·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 방지를 위한 선도·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50조(개정안) 외에 제3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9조에서도 친권자등을 인용하고 있는바, 체계상 제50조에서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한

11)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하여 일정기간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대부분은 해당 시설의 장이 친권자를 대신하여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자립지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인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등으로 가족이나 대인관계(친구, 급우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입교일 기준 만 9세 이상 수료일 기준 18세 이하(대구의 경우 만 13~18세)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기관이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및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있음.

다고 규정할 경우 제3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9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친권자등에는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제3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권자등에게 청소년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1조제3항¹²⁾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4조 및 제25조¹³⁾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16세 미만

12)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고시) ①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를 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고시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3)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회원으로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친권자등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 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삭제 <2021. 12. 7.>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를 알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제5항¹⁴⁾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개정안 제50조에서만 “친권자등”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된다고 개정하는 경우 다른 조문들의 “친권자등”에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제외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청소년 보호법」상의 다른 조문들의 집행과 관련하여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¹⁵⁾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하여 청소년쉼터협의회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협의회는 친권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선도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친권자등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14)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②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를 말한다.

15) 법제처도 동일한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5